

대구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나330882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나33088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564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권재철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최월영

변론 종결 2023. 3. 9.

판결 선고 2023. 3. 2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564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D, E호에 있는 사찰인 F사의 주지이고, 피고는 F사의 신도이다.
- 2) 피고의 아들 C은 1967년생으로 2009년 말경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돌봄을 위탁하였고, C은 2010. 8.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F사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나. 채권자 원고, 차용인 C, 연대보증인 피고로 기재된 차용증서

원고는 '채권자 원고, 차용인 C, 연대보증인 G(피고의 남편) 및 피고, 작성일자 2015. 6. 26.'로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를 갑 1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차용인 란에는 C 명의의 인영이, 연대보증인 란에는 G 및 피고 명의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일억 천오백 원정(단 이자 2부)

위의 금원을 C이 원고에게서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2017. 7. 1.까지 원고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C이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G, 피고가 대신 이행하여 원고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차용인 C

연대보증인 G, 피고

채권자 원고 귀하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대구지방법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14298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1. 1. 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4. 대구고등법원 2021초재277호로 피고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갑 5호증의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¹⁾.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서 중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용증서는 그 작성명의인이 C, G, 피고로 된 연명문서이므로 각 작성명의 부분마다 각별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서 중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영의 동일성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인영의 동일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인영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문서제출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갑 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H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과 피고의 인감대장에 날인된 인영은 육안으로 보아도 그 형상이 확연히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서 중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은 인영의 동일성에 의한 진정성립의 2단계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진정성립 여부 인영의 동일성에 의해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 중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의 진정성립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에게 기존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니 피고는 '한 페이지 써주면 되지,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C에게 전화로 차용증을 써주라고 했다. C은 원고가 나간 사이 혼자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를 받아 피고에게 가져가서 날인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갑 5호증의 2).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 경위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서 중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면, 실체관계와 달리 아들인 C을 차용인으로,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C에게 '차용인', '연대보증인', '지참' 등 법률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여 혼자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할 만한 사물 변별능력이 있었다면, C으로서도 피고가 빌린 돈에 대해 자신이 빌렸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C이 가족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어 원고에게 C을 맡겼다. 또한 C은 원고와 함께 살게 된 이후 2010. 8. 9.경 I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소변을 지리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 3개월 만에 중퇴하였고, 이후에도 불고 경전을

필사하는 정도의 학습활동 이외에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못한 채 원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C의 지적 능력을 특히 신뢰하여 굳이 C에게 차용증 작성을 부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비록 피고가 자신의 이름 정도밖에 한글을 쓰지 못한다고는 해도, 피고는 동생인 J2), 딸인 K와 왕래하였으므로 C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③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차용증서는 연명문서이므로, 설령 이 사건 차용증서가 C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까지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서 중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이 사건 차용증서 중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을 증거로 쓸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4. 말경부터 2015. 초경까지3)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지 않고, 앞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피고로부터 즉시 차용증이나 수령증을 받지 않은 채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현금으로만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을 맡게 된 이후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C의 식생활 등에 한 달 평균 2,871,900원이 들었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가 C을 맡게 된 2010. 8.경 이후 수년간 C의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2014. 말경부터 2015. 초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2013. 5. 30.부터 2015. 3. 27.까지 원고에게 기도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가 인정하거나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에 이른다.

1	2013. 5. 30.	G	산삼 구입	8,000,000
2013. 8. 28.		12,000,000		
2	2013. 8. 29.	K	법당 차림	40,000,000
3	2015. 3. 27.	C	건강기도4) 이에 관한 이체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이 2015. 3. 27. 원고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고(갑 5호증의 5),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메모에는 위 돈이 건강기도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5호증의 6).	10,000,000
합계	70,000,000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지급할 자력이 있음에도, 피고의 채소 장사를 위해 물건을 떼 올 돈이 없어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④ 피고는 2015. 12. 29.부터 2017. 10. 10.까지 원고에게 22회에 걸쳐 월 23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차용금 1억 1,5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월 230만 원씩을 입금하던 중인 2016. 4. 29. 원고에게 천도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월 2%는 2015년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에 육박하는 고리인데, 피고가 천도제 비용으로만 1,5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이자가 매월 지급되는 차용금은 변제하지 않은 채 천도제 비용만 따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진

판사정주희

판사유진홍

- 1)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C에 대하여 1억 1,5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2020. 8. 14. 제출 준비서면부터 '1억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이고,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아들인 C을 시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라고 하여 주장을 변경하였다.
- 2) J은 2017. 10. 30. C을 원고로부터 데려오면서 원고에게 확인서(을 4호증)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 3)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2014. 5.경 5,000만 원, 2014. 7.경 3,000만 원, 2015. 1.경 2,000만 원, 2015. 5.경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4) 이에 관한 이체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이 2015. 3. 27. 원고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고(갑 5호증의 5),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메모에는 위 돈이 건강기도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5호증의 6).